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919
----------	------

2025년 9월 2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박강산 의원(찬성자 20명)
- 나. 제 안 일 : 2025년 8월 8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 라. 상 정 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년 9월 2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강산 의원)

가. 제안 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중시하는 외교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도시외교 관련 기능과 협력사항을 보완하여 정책고문이 정책방향 제시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서울시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제4호 신설)

- 나. 국제 정책고문의 협력사항에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하는 내용을 추가함 (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외교법」, 「서울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글로벌도시정책관) : 원안 가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으로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4호), 정책고문이 서울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안 제5조제3항)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 ①·② (생략) <u><신설></u>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4. 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u>

나.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 운영 현황

- 서울시는 2001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을 설치¹⁾하여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왔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고정적인 자문단 구성으로 인한 탄력적 전문가 활용의 어려움, 현안 자문의 적시성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됨. 이에 따라 2023년 자문 범위를 경제 분야에서 주요 시정 전

1)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2. 4. 제정

분야로 확대하고 수시 자문체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제정²⁾하여 2024년부터 새로운 국제 정책고문 제도를 시행함

- 현재 서울시 국제 정책고문은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등 주요 시정 분야와 저출생, 기후변화 등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총 1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명단 별첨). 정책고문들은 각 분야 저명인사와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학자들로 구성되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국제회의 참석 및 정책 해외홍보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함

다. 조문별 검토

(1) 국제 정책고문 기능 추가

- 도시외교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4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는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으로 도시외교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장이 신설³⁾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역할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도시외교 기능이 강화되어 왔음

2)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7. 제정

* 부칙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3) 「지방자치법」 제10장 국제교류·협력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지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러한 법적 기반하에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시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으로 도시외교·공공외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조례에 이미 규정된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신설하려는 도시외교에 관한 내용은 그 의미가 유사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각 호의 역할과 범위,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구분	세부내용	비고
개념적 중복	• 국제도시 정책 (제1호) vs. 도시외교 정책 (신설 제4호) • "정책 방향" 용어 직접 중복 (제1호, 신설 제4호)	
연관관계	• 국제도시 정책에 도시외교 정책 포함 (제1호, 신설 제4호) • 도시외교의 성과 = 국제사회 역할 증대 (제2호, 신설 제4호)	

(2) 국제 정책고문 협력사항 추가

-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안 제5조제3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은 정책고문의 협력사항으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2조(기능)가 정책고문의 자문 대상 영역과 범위를 규정한다면,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는 국제 정책고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제2조에 도시외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협력 역할을 제5조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글로벌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 브랜드와 브랜딩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책고문들이 서울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향후 국제 정책고문의 활동이 단순한 자문 제공이나 상징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서울시 정책 수립과 개선, 도시 브랜딩 전략에 실효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과 체계적인 운영과 활용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임. 특히 정책고문들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글로벌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국제 정책고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역할이 법적으로 명문화되고, 글로벌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도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책고문들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정책고문들이 서울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향후 국제 정책고문의 활동이 형식적·명목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정책 개선과 도시 브랜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현행 조례의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과 이번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도시외교 관련 내용이 의미상 유사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각 호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질 의 및 답변요지: 생 락

6. 토 론 요 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1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박강산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왕정순, 유정희,
윤영희, 이민옥,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중시하는 외교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도시외교 관련 기능과 협력사항을 보완하여 정책고문이 정책방향 제시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서울시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나. 국제 정책고문의 협력사항에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외교법」,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2조(기능)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u>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도시외교 관련 기능과 협력사항을 보완하여 정책고문이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조례 제2조 (기능)제4호 및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제3항을 신설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